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안성배**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연구위원 (sungbae@kiep.go.kr, 044-414-1190)
권혁주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연구원 (hjkwon@kiep.go.kr, 044-414-1086)
이정은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연구원 (leeje@kiep.go.kr, 044-414-1236)
정재완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044-414-1051)
조고운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kucho@kiep.go.kr, 044-414-1145)
조동희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부연구위원 (dhjoe@kiep.go.kr, 044-414-1123)

차 례

1. 가상통화 현황
2. 주요국의 정책 현황
3.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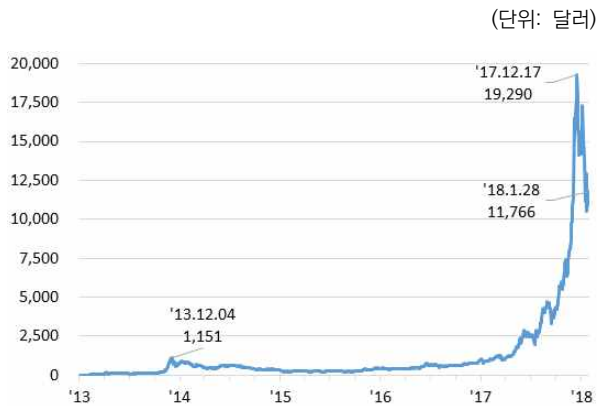
- ▶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술의 분권적 성격으로 기존의 글로벌 금융체제하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전망
 - 가상통화가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점차 채택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제한적인 한편, 상품 및 자산으로서 거래소와 장외시장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거래의 익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한편 새로운 금융자산으로서의 적합성과 국제자본 흐름에의 영향 등의 측면에서 각국 정책당국이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관련 시장의 제도 형성 및 규제에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전망
- ▶ 주요국은 기존 제도와 정책 목표에 따라 가상통화 및 관련 시장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
 - 미국은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행위 규제 △가상통화의 과세 대상 기준 △자산운용사의 가상통화 투자 등의 금융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
 - 일본은 가상통화 사업가의 파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행
 - 중국은 향후 5년의 핵심 정책인 금융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실시
 - 유럽은 현행 가상통화가 아직은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유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
 - 동남아 각국에서는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금 △방문 외국인의 여행경비 지출 등에 가상통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산업이 발달한 싱가포르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가상통화공개(ICO)가 활발해짐에 따라 엄격한 보고의무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 중
- ▶ 주요국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차이의 배경을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가상통화 및 관련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각국의 과세 방안과 규제 도입의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가상통화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므로 주요국과 양자간 협력 및 G20 등 다자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1. 가상통화¹⁾ 현황

■ 비트코인(Bitcoin; BTC) 등 가상통화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화폐를 대체 및 보완하는 지급결제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2016년 말 중국의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로 인한 자본통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1월 3일 미화 1,023달러에서 12월 17일 19,290달러로 급등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비트코인의 일일 거래횟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2월에 평균 35만회를 넘어섬.

그림 1. 비트코인 가격



자료: blockchain.info(검색일: 2018. 1. 29).

그림 2. 비트코인 일일 거래횟수



자료: blockchain.info(검색일: 2018. 1. 29).

- 미연준(FRB)²⁾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³⁾ ECB(European Central Bank),⁴⁾ IMF⁵⁾ 등 각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가상통화 관련 기술 현황과 통화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기존의 명목화폐를 보완하는 중앙은행 가상통화(CBCC: Central Bank Cryptocurrency) 혹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발행을 연구 및 실험 중⁶⁾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결제수단으로서 점차 채택되고 있으나, 거래비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오프라인 상점을 등록하는 coinmap.org에 따르면 2018년 1월 30일 현재 세계 11,750개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가능⁷⁾
- 온라인 상점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⁸⁾ 오버스톡,⁹⁾ 엑스피디아,¹⁰⁾ 뉴에그¹¹⁾ 등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

1) 이 현상을 지칭하는 각국의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혹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디지털코인(digital coin), 암호화폐(cryptocurrency) 등의 용어가 구별되지 않고 쓰임.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 국가의 공식 명칭이 없는 경우 가상통화로 지칭함.

2) Mills et al.(2016),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Payments, Clearing, and Settlement,"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6-095, FRB System.

3) BIS(2015), "Digital Currencies," Committee on Payment and Market Infrastructures(CPMI).

4) ECB(2015), "Virtual Currency Scheme-A Further Analysis."

5) IMF(2015),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IMF(2017),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Initial Considerations."

6) Bech, M. and R. Garratt(2017), "Central Bank Cryptocurrencies," *BIS Quarterly Review*, pp. 5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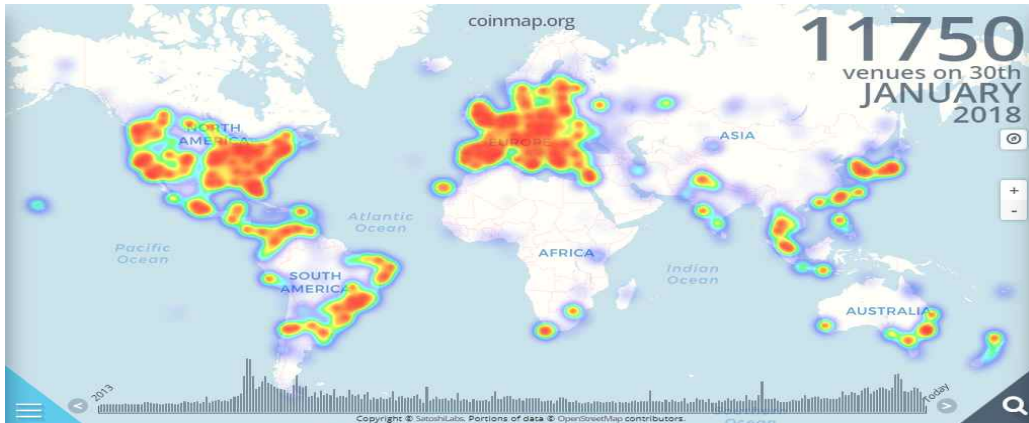
7) 회계법인 PwC의 홍콩 사무소는 자문서비스 수입료를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하다고 발표

<https://www.pwchk.com/en/press-room/press-releases/pr-301117.html>(검색일: 2018. 1. 31).

8) <https://support.microsoft.com/en-us/help/13942/microsoft-account-add-money-with-bitcoin>(검색일: 2018. 1. 31).

- 비트코인의 경우 우발적 거래에 대한 취소의 어려움, 블록체인의 낮은 갱신 빈도, 높은 가격 변동성, 가격 상승에 따른 상대적 거래비용 상승 등의 문제로 대중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제한적

그림 3. 비트코인 결제 가능 오프라인 상점의 분포



자료: coinmap.org(검색일: 2018. 1. 31).

■ 가상통화는 하드포크, 가상통화공개 등을 통해 알트코인¹²⁾을 생성해가며 다양성을 늘려가고 있으며, 가상통화 거래소 및 P2P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음.

- 비트코인 이외에도 다양한 가상통화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coinmarketcap.com에 따르면 2018년 1월 28일 현재 유통되는 1,474종 가상통화의 시장 평가금액이 5,891억 달러에 이룸.
 - 가상통화 시장에서 2018년 1월 29일 시가총액 기준 비트코인의 비중은 33.6%이며, 이더리움(Ethereum; ETH) 21.1%, 리플(Ripple; XRP) 8.8%를 포함한 상위 10개 가상통화가 75.9%의 비중을 차지함.
 - 가상통화 중 알트코인의 비중이 커져감에 따라, 자체 독립적인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되는 코인(coin;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과 기존의 블록체인상에서 작동하는 토큰(token; 이더리움 기반의 EOS, TRON 등, 비트코인 기반에서 옴니 레이어 프로토콜을 통해 발행되는 테더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
- 신규 가상통화는 새로운 블록체인 개발, 하드포크(hard fork), 가상통화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등을 통해 만들어짐.
 - 기술 업데이트 및 운영방침의 방향성에 따라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분기해 이후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하드포크라 하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17.8.1.), 비트코인 골드(17.10.24.)가,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16.7.24.)이 생성됨.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통화공개(ICO)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프로젝트와 관련한 새 가상통화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coinschedule.com에 따르면 2017년 ICO를 통한 조달액은 235개 프로젝트에 걸쳐 37억 달러에 이르며,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한 프로젝트도 Filecoin, Tezos, EOS stage 1 등 5개임.

9) <https://www.overstock.com/bitcoin>(검색일: 2018.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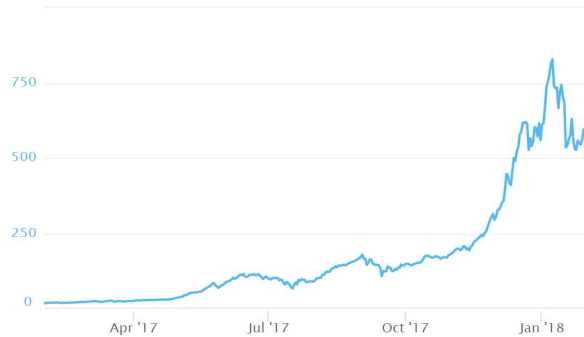
10) <https://www.expedia.com/Checkout/BitcoinTermsAndConditions>(검색일: 2018. 1. 31).

11) <https://promotions.newegg.com/nepro/16-6277/index.html>(검색일: 2018. 1. 31).

12) 알트코인(altcoin)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통화를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

그림 4. 가상통화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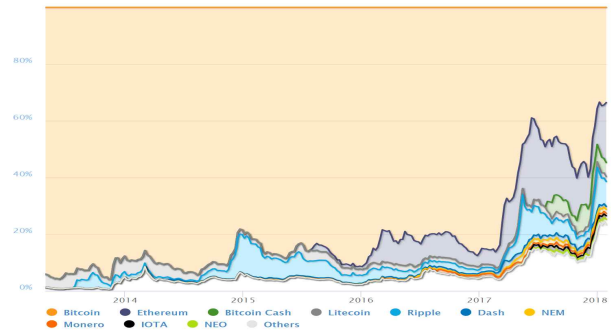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주: 미 달러화로 환산한 각 가상통화 시가총액의 합.
자료: coinmarketcap.com(검색일: 2018. 1. 31).

그림 5. 가상통화 종류별 점유율

(단위: %)



주: 미 달러화 환산 시가총액의 비중.
자료: coinmarketcap.com(검색일: 2018. 1. 31).

- 가상통화는 각국의 개별 거래소에 상장되어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한편, P2P(peer-to-peer) 기반의 장외 거래(OTC: over-the-counter)가 이루어지기도 함.

- 거래소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수의 가상통화를 상장시키고, 법정통화 및 가상통화 간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
- △2014년 2월 당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일본의 마운트곡스(Mt. Gox, 비트코인 85만 개 등) △2016년 8월 홍콩의 비트피넥스(Bitfinex, 비트코인 12만 개 등) △2017년 12월 한국의 유빗(Youbit, 거래소 전체 자산의 17%) △2018년 1월 일본의 코인체크(Coincheck, 가상화폐 NEM 5억 2,300만 개 포함 5억 달러 상당) 등 대규모 거래소 해킹으로 자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파산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음.
- 거래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P2P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 서비스를 통해 OTC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9월 중국 당국의 거래소 폐쇄 예고 이후 Localbitcoins, Coincola, Paxful 등 P2P 중개소를 통한 위안화 기반 거래가 유의하게 증가¹³⁾

■ 가상통화는 분산원장시스템과 암호화 기술에 기반하여 익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한편,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서의 적합성과 국제자본 흐름에의 영향 등의 측면에서 각국 정책당국이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관련 시장 제도 형성 및 규제에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전망

-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중심으로 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시스템에서는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공인된 중앙집중형 기관 없이도 네트워크 참여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 가능¹⁴⁾

- 전통적으로 소유권과 거래를 기록한 원장의 관리는 공인된 특정한 기관이 담당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로 기관에 대한 신뢰(TTP: Trusted Third Party)에 의존
- 분산원장기술은 소유권과 거래정보가 담긴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모든 참여자가 각각 보관하고 새로운 거래내역을 갱신하는 작업도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뢰 구축을 위해 암호화 기술 등이 적용되며 익명성 획득 가능¹⁵⁾

- 가상통화의 가격이 급등하며 투자 자산으로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버블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법적 지위,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중개하는 거래소 허가 기준 등

13) <https://www.ifcert.org.cn/industry/29/IndustryDetail>(검색일: 2018. 1. 31).

14) 한국은행(2016),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20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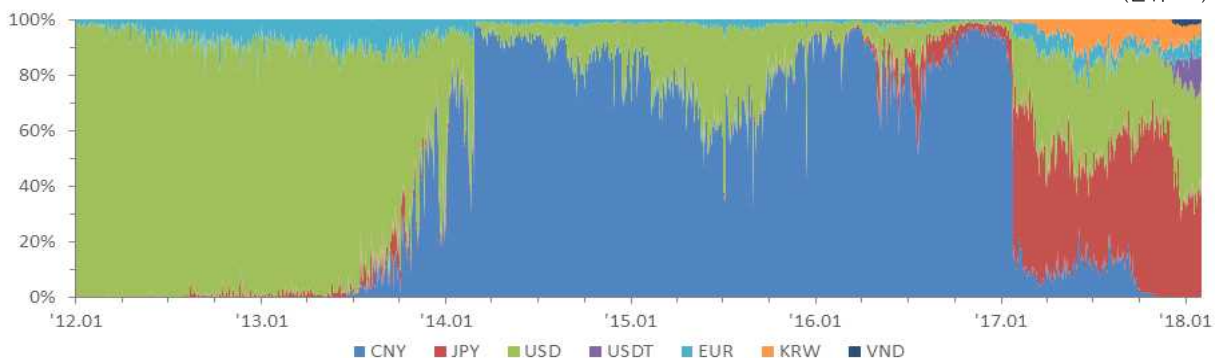
15)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징의 개요는 '알기 쉽게 이해하는 비트코인'(<http://www.leejungmin.org/post/2017/05/30/mastering-bitcoin/>) 참고.

정책적 규제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가상통화에 대한 수요는 투자 자산, 지급결제 수단, 파생상품의 기초 자산, 자본흐름 통제에 대한 우회 수단 등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상이
- 금융 자산으로서 가상통화는 낮은 거래문턱과 항시 거래가능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있음.
- 비트코인의 경우 10^{-8} (1억분의 1)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여 적은 자본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다수에 의해 쏠림 현상(herd behavior)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IT기술의 발전 및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한 한편, 대부분의 거래소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음.
- 각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의 통화별 거래비중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자본흐름 경로를 벗어난 거래 사례들이 발생
- 비트코인 도입 초기 미 달러화 거래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3년 후반부터 위안화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2017년 본격화된 중국의 가상통화 거래 규제 조치와 일본의 가상통화에 대한 제도화에 따라 위안화 거래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엔화와 원화의 거래비중이 증가
- 테더(tether) 토큰은 법정화폐에 페그하여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통화로, 공급량 증가와 더불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일어났으며¹⁶⁾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비트 피넥스 거래소 및 테더 회사 관계자에게 소환장을 보내고(17.12.6.) 조사를 진행¹⁷⁾
- 한국의 관세청은 국가간 환치기계좌의 잔고를 맞추기 위해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신종 환치기수법과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해외 미신고 계좌 개설 및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 등 1,700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¹⁸⁾
- 인천본부세관은 2018년 1월 25일,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팔아 금괴 68kg을 구매하여 출국하던 일본인을 조사했으나 금을 압수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하고 출국시킴.¹⁹⁾

그림 6. 주요 통화의 비트코인 거래비중 추이

(단위: %)



주: 상위 7개 통화와 교환된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 USDT는 미 달러화에 1:1로 페그된 테더 토큰을 나타냄.
자료: cryptocompare.com(검색일: 2018. 1. 31).

16) <http://www.tetherreport.com/>(검색일: 2018. 2. 2).

1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1-30/crypto-exchange-bitfinex-tether-said-to-get-subpoenaed-by-cftc>(검색일: 2018. 2. 1).

18) 관세청(2018), 「관세청,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관세청 보도자료(1월 31일).

19) 경향신문(2018), 「비트코인 팔아 한국 금괴 68kg 갖고 출국한 일본인, 금거래소선 VIP 대접」(1월 31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310942001(검색일: 2018. 1. 31).

글상자 1. 테더 토큰과 비트피넥스 거래소

- 테더(tether)는 법정화폐와의 안정적 교환을 목표로 하여 발행된 토큰이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 및 비트피넥스 거래소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가상통화 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증가시킬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가상통화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래 시 법정화폐에 대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통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가상통화의 달러화 가격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달러화 은행계좌와 연결된 거래가 필요하나, 다수의 거래소들이 상업 은행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²⁰⁾
 -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옴니 프로토콜을 통해 구현된 달러화표시 테더(USDT)는 달러화와 1대1 교환을 보장
 - 홍콩 법인 테더 회사(Tether Holdings)는 발행한 테더 수량과 동일한 금액의 법정화폐를 거래은행에 예치금으로 보존하고 고객의 인출 요구 시 테더와 법정화폐를 교환해 주기로 함.
 - 유로화표시 테더(EURT)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 구현되었으며 유로화와 1대1 교환
 - 현재까지 발행된 USDT가 충분한 은행 예치금으로 보장되는지 의문이 제기됨.
 - 2018년 1월 31일 현재 22억 5천만여 개의 USDT가 발행되었으며, 2017년 9월 1일 3억 2천만여 개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²¹⁾
 - 2017년 4월, 미국의 웰스파고(Wells Fargo)은행이 테더의 달러화 인출 계약을 파기하였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발행하던 감사보고서가 발간되지 않고 있음.²²⁾
 - 홍콩 거래소인 비트피넥스는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소로, 거래되는 모든 가상통화의 현금화를 테더로 페그함.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iFinex Inc.가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CEO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영진이 테더의 경영진과 일치
 - 중국 당국이 가상통화의 위안화 거래를 금지한 후, OKEx, Huobi, HitBTC 등 위안화 기반의 거래소들도 테더 기반으로 전환
 - USDT를 통한 거래량이 비트코인 총 거래량의 10%에 이르고 있어 테더의 안정성이 향후 가상통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20)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를 목적으로 고객신원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절차를 밟아야 함.

21)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tether/>(검색일: 2018. 2. 1).

22) 2017년 9월 17일 뉴욕의 회계법인 Friedman LLP가 발행한 메모(memorandum)에 따르면 은행 예치금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하나, 이는 감사보고서가 아니기에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

- 주요국 정책 당국이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위험과 버블 발생에 따른 투기 가능성을 인식하고 국제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여, 2018년 G20 주요의제로 논의될 전망
- o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통화가 스위스 은행의 숫자계좌²³⁾(Swiss numbered bank accounts)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G20과 함께 협력할 것을 언급(18.1.12.)
- o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자금세탁, 마약거래, 테러자금 지원 등 불법적인 활동을 감출 수 있음을 지적하고 4월 열리는 G20 회의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공동 규제 대응을 제안(17.12.18.)하였으며, 독일과 이탈리아가 프랑스 입장의 지지를 표명

2. 주요국의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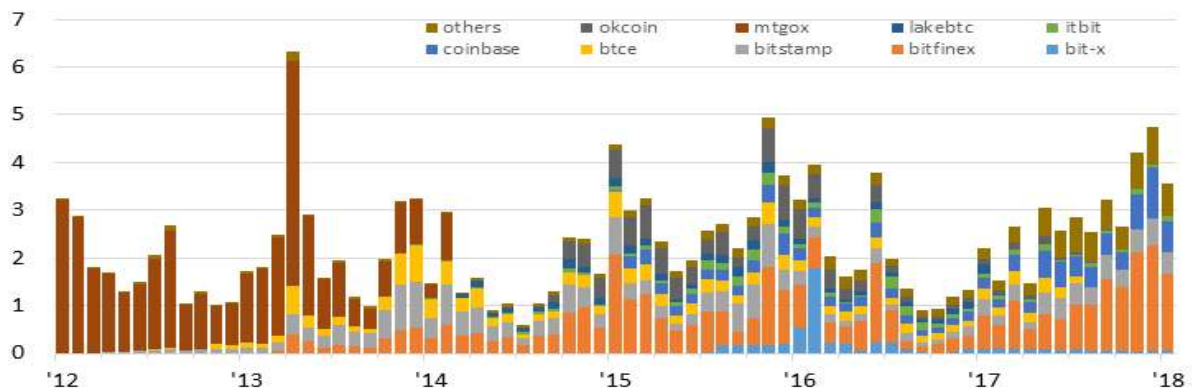
가. 미국

■ [거래 현황] 비트코인의 미 달러 거래량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²⁴⁾

- 2009년 1월 출시된 비트코인의 경우 미 달러 거래량은 2012년 들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그림 7 참고),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함에 따라 시기총액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비트코인 거래 초반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주도하며 전체 기간 누적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2년 거래 기준으로는 비트피넥스, 코인베이스(Coinbase)²⁵⁾, 비트스탬프(Bitstamp) 3개 회사가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표 1 참고).

그림 7. 미 달러를 사용한 비트코인 거래량 추이

(단위: 백만 비트코인)



자료: <http://data.bitcoinity.org/markets/volume/all/USD?c=e&t=b>(검색일: 2018. 1. 30).

23) 예금주의 이름이 아닌 계좌번호로만 인식하는 계좌로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대부분의 가상통화 계좌의 익명성이 비슷한 수준임.

24) 해당 자료들은 모두 미 달러를 사용한 비트코인 거래량임으로 거래소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음.

25) 코인베이스는 기관 및 전문투자자를 위한 거래소인 GDAX(Global Digital Asset Exchange)를 설립·운영 중임.

표 1. 미 달러의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 현황(최근 2년 기준)

(단위: 백만 비트코인, %)

거래소명	거래량	시장점유율
Bitfinex	20.1	34.5
Coinbase	8.2	14.0
Bitstamp	6.9	11.8
Luno(前 BitX)	3.9	6.7
Gemini	3.7	6.4
BTC-e	3.4	5.8
OKCoin	3.1	5.2
Kraken	2.5	4.2
itBit	2.4	4.1
기타	4.3	7.3

자료: <http://data.bitcoinity.org/markets/volume/all/USD?c=e&t=b>(검색일: 2018. 1. 30).

■ [규제 현황]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까지 가상통화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이나 시행령을 내린 바는 없으나 기존의 법 범위 내에서의 규제 움직임은 강화되고 있음.

- 미국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법안 틀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임.
- 연방정부 기관 중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관련 내용을 공시한 기관은 금융범죄단속국(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과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임.
-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정은 ①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행위 규제 ② 가상통화의 과세 대상 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최근 가상통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미 당국도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금융범죄 관련 규정] FinCEN은 미 연방정부 기관 중 가장 먼저 가상통화와 이를 거래하는 주체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고 있음.

- FinCEN은 Bank Secrecy Act에 의거하여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s Business)를 규제 및 감시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당국은 2013년 3월 18일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라는 제목의 지침서(guidance)를 발행²⁶⁾
 - 해당 지침서는 분산(decentralized) 시스템의 가상통화와 더불어 E-gold, Liberty Reserve 등 중앙화 시스템의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틀어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로 정의하고 있음.
- FinCEN은 가상통화의 거래 주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
 - 규제 당국은 가상통화 거래 주체를 사용자, 교환자, 관리자로 구분(표 2 참고)
 - 지침서에 따르면 교환자와 관리자가 자금서비스업자로 구분이 가능하며 규정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음.

26)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shared/FIN-2013-G001.pdf>(검색일: 2018. 1. 22).

- 하지만 탈중앙화 가상통화 시스템의 논리로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FinCEN의 규제 적용이 가능한 주체는 교환자라는 분석²⁷⁾28)
- FinCEN이 교환자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가상통화 거래상 제3자 개입의 유무임.

표 2. FinCEN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주체에 대한 정의

거래 주체	정의
사용자 (user)	실질/가상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교환자 (exchanger)	가상통화를 실질통화, 자금(fund), 또다른 가상통화로 교환해주는 사업 영위자
관리자 (administrator)	가상통화의 발행과 회수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자

자료: FinCEN(2013),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검색일: 2018. 1.22).

■ [거래 관련 과세 규정] IRS는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 국세청은 2014년 3월 지침서를 통해 가상통화는 자산(property)으로 인식되며 이를 이용한 거래는 자산 거래 시 적용 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과세한다고 적시²⁹⁾
- 거래를 통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게 된 거래자는 이를 소유하게 된 시점 기준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적용하여 총소득(gross income)에 계상하여 신고해야 함.³⁰⁾
- 채굴자(miner) 역시 가상통화를 채굴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를 적용
- 이는 가상통화 매수와 매도 시점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또한 IRS는 현행법상 가상통화가 외환 차익·차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정통화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힘.
- 과세 당국은 가상통화를 증권 등의 상품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가상통화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는 있더라도 법정통화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통화간 거래 납세 의무] 2017년 말 세제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통화간 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됨.

- 가상통화 거래자 중 상당수는 '동종자산교환(like-kind exchange)³¹⁾'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 나가는 편법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사료됨.³²⁾

27) <https://coincenter.org/entry/aml-kyc-tokens>(검색일: 2018. 1. 22).

28) 분산 시스템의 가상통화는 특정한 발행은 가능하지만 회수가 불가능함. FinCEN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자는 가상통화의 발행과 회수 모두 단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임.

29) <https://www.irs.gov/pub/irs-drop/n-14-21.pdf>(검색일: 2018. 1. 24).

30) IRS는 가상통화의 공정시장가치 산정 방식을 별도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보유 시 해당 거래소의 화폐 가격이 수요·공급 원리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 해당 가치를 미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

31) 동종자산교환은 거래대상 자산을 유사한 성격을 지닌 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뜻하며, 가상통화의 경우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거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32) <https://www.forbes.com/sites/greatspeculations/2017/08/15/cryptocurrency-traders-risk-irs-trouble-with-like-kind-exchanges/#75d0c1e626a8>

- 기존 세제 시스템에서는 동종자산교환을 할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한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납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으나 세제개혁안은 납세대상 제외 가능 자산을 부동산으로만 한정하며 앞으로는 가상통화간 거래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분석³³⁾

○ 그러나 세제개혁안의 내용은 가상통화 거래만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사료

■ [금융감독] 미 증권거래위원회(SEC)³⁴⁾도 2017년 중반부터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을 공지하며 점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SEC는 2017년 7월 25일 보고서를 통해 ICO를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 거래 및 투자는 미 연방의 증권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관련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³⁵⁾
 - 일각에서는 SEC가 ICO를 폐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당국이 가상통화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폐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석³⁶⁾
- SEC의 가상통화 투자 관련 규제는 2017년 중반부터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17년 8월 말 SEC의 ICO 관련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Prostarr는 ICO를 통해 모집한 투자금(이더리움)을 모두 투자자에게 환급
 - 2017년 9월 29일 뉴욕시의 2개 기관이 ICO를 통한 사기를 이유로 기소³⁷⁾
 - 2017년 12월 4일 ICO 사기죄로 PlexCorps와 해당 기업의 운영자 Dominic Lacroix를 기소³⁸⁾
-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2018년 1월 8일 다수 ICO 및 가상통화 투자가 미 연방증권법에 의거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언급³⁹⁾
- SEC는 자산운용사 관련 협회 등에 서신을 보내며 ICO를 비롯한 가상통화를 아직 뚜렷이 증권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언급⁴⁰⁾
 - 이와 동시에 SEC는 향후에도 자산운용사의 가상통화 투자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

■ [국제공조방안] 가상통화의 거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미국 재무부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제공조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 시걸 맨델커(Sigal Mandelker)는 2018년 1월 17일 미 의회 은행위원회(US Senate Banking Committee) 청문회 자리에서 가상통화가 '진화하는 위협(evolutionary threat)'이라고 표현하며 가상통화가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⁴¹⁾

(검색일: 2018. 1. 25).

33) <https://www.ethnews.com/tax-cut-bill-to-require-taxation-of-cryptocurrency-trades-in-us>(검색일: 2018. 1. 25).

34)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35) <https://www.sec.gov/litigation/investreport/34-81207.pdf>(검색일: 2018. 1. 25).

36) <https://www.ccn.com/the-sec-on-icos-and-cryptocurrency-a-rocky-but-optimistic-ride/>(검색일: 2018. 1. 29).

37)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7-185-0> (검색일: 2018. 1. 29).

38)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7-219>(검색일: 2018. 1. 29).

39)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sec-bitcoin/sec-warns-bitcoin-cryptocurrency-investors-at-risk-idUSKBN1ET1YI>(검색일: 2018. 1. 29).

40) <https://www.sec.gov/divisions/investment/noaction/2018/cryptocurrency-011818.htm>(검색일: 2018. 1. 29).

41)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0251>(검색일: 2018. 1. 28).

- 미 재무부는 FinCEN을 통해 100여 개의 가상통화 관련 거래소 및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IRS와의 협업하에 이들에게 준법감시(compliance)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에서 준법감시 시스템의 역할이 크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⁴²⁾
- 맨델커 차관은 가상통화의 불법 사용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인 공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아시아 순방 중 2018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와의 만남을 통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조치 강화 및 국제공조에 대하여 논의⁴³⁾

나. 일본

- [거래 현황] 일본에서는 2015년 이후 가상통화⁴⁴⁾ 거래량 및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일본(엔화)이 비트코인 거래량 1위국으로 등극하였으며,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7년 이후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에 가까운 규모가 엔화로 거래되고 있음.⁴⁵⁾
- 중국의 가상통화 규제조치 강화 및 일본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에 힘입어 2017년 일본 국내거래소 및 일본 내 가상통화 거래 총액이 급증하여 세계 거래량 1위로 올라섰음.
- 일본 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bitFlyer)의 거래비율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90.1%), 외환(FX) 마진거래가 대부분(75.6%)임(그림 9 참고).
-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업종·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은행간 송금에 비트코인 활용을 논의하는 등 가상통화의 ‘투자수단이 아닌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일본 가전유통업체 1, 2위인 아마다 전기와 빅카메라, 리크루트 계열사인 리크루트 라이프스타일, 베틀시장 앱 메루카리(비트코인 결제 가능), LP 가스판매회사 미츠와산업(三ツ輪産業, 전기·가스요금 비트코인으로 납부 가능) 등이 존재하며, 미쓰비시(三菱)도쿄UFJ, SBI 홀딩스 등 금융기관은 비트코인·리플 등 가상통화를 활용한 은행 간 송금서비스를 개발·검토하고 있음.⁴⁶⁾

42) 맨델커 차관은 2017년 7월 당시 세계 가상통화 거래소 중 가장 큰 규모였던 BTC-e에 대해 랜섬웨어, 해킹, 신원도용 등을 이유로 1억 1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BTC-e 운영자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비닉(Alexander Vinnik)을 그리스에서 체포하고 1천 2백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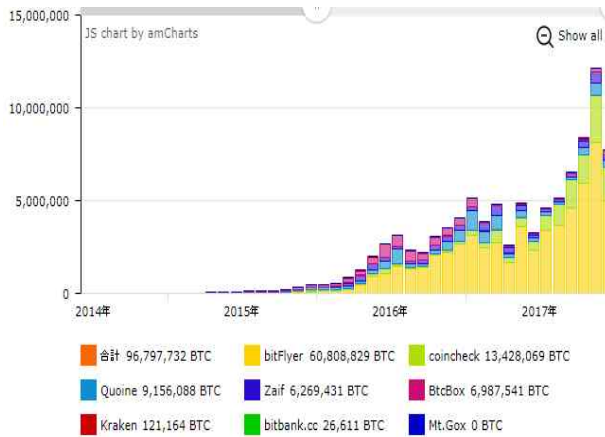
43) <http://vip.mk.co.kr/news/view/21/20/1569796.html>(검색일: 2018. 1. 25).

44) 일본은 법률안, 공식적인 정부 문건, 기사 등에서 ‘가상통화(仮想通貨)’라는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으며, ‘암호통화(暗号通貨)’는 주로 해외기사 등을 인용할 때 사용.

45) 출처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2017년 이후 일본의 가상통화·비트코인 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30~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음. 본 보고서는 2018년 1월 30일자 cryptocompare.com의 통계를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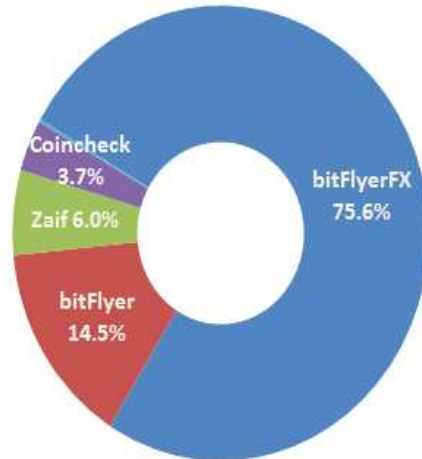
46) 가상화폐로 결제 시 청구 금액은 해당 가상화폐의 시가에 연동.

그림 8. 일본거래소의 가상통화 월간거래총액(JPY-BTC)



주: 단위는 비트코인.
자료: Bitcoin日本語情報サイト(검색일: 2018. 1. 29).

그림 9. 거래소별 거래 비율(JPY-BTC)



주: 최근 일주일(2018. 1. 22~2018. 1. 18) 거래량 평균.
자료: cryptocompare.com(검색일: 2018. 1. 29).

■ [규제 배경] 일본은 국내 가상통화 사업가의 파산 및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국제적 요청을 배경으로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행

- 2014년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통화(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사의 파산으로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
 - 2014년 2월 마운트곡스는 고객 예치분이었던 75만 비트코인과 회사보유분 10만 비트코인, 포함 85만 비트코인이 분실되었다고 발표, 이후 20만 비트코인은 회수했으나 65만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했음.⁴⁷⁾
 - 당초 마운트곡스는 외부 해킹에 의해 비트코인이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으나, 경찰 수사결과 내부 시스템 부정 조작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5년 마운트곡스 CEO인 마크 카펠레스가 시스템 조작·횡령 혐의로 체포됨.
- 가상통화가 자금세탁·테러에 이용될 위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G7 정상회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의 등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국제적 공동 대응 촉구
 - 2015년 6월 G7 정상회담에서 가상통화 및 기타 새로운 지불수단의 규제를 통해 국제 금융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
 - 동월 FATF에서 가상통화와 법정통화를 교환하는 교환소(exchanger)에 등록·면허제 의무 부과, 이용자 본인 확인 강화, 의심거래 보고, 기록보존 의무 등을 포함한 자금세탁·테러자금 규제 가이드라인을 공표⁴⁸⁾
- 국내외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⁴⁹⁾ 이를 바탕으로 2016년 5월 가상통화 관련법이 성립되어 2017년 4월부터 시행됨.

47) 85만 비트코인은 당시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 비트코인=550달러로 계산하면 약 470억 엔 상당.

48) <http://www.fatf-gafi.org/publications/fatfrecommendations/documents/guidance-rba-virtual-currencies.html>(검색일: 2017. 1. 28).

49) 금융청 금융심의회 산하 스터디그룹에서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2015년 7월 워킹그룹(決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으로 개편된 이후 가상통화 관련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제안함. 이를 바탕으로 한 법률개정안이 2016년 3월 국회에 제출되었음.

■ [가상통화법 시행] 일본정부는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가상통화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통화법’을 제정, 2017년 4월부터 시행

- 은행법 등 개정안⁵⁰⁾ 중 자금결제법 및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개정 법안과 관련 정령(시행령)·내각부령 등을 통틀어 ‘가상통화법(Virtual Currency Act)’이라고 지칭
- 본 법률안은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교환업자의 법적 지위 확립 △가상통화교환업자의 의무 규정 △가상통화 교환업자에 대한 감독 및 위반 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가상통화를 전자적으로 기록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여 가상통화의 법적 지위 확립(글상자 2 참고)
 - ‘가상통화교환업자’를 ① 가상통화 교환 또는 ② 교환의 매개·중개·대리를 업으로 행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P2P 거래 및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교환뿐 아니라 중개인, 중개회사 통합 플랫폼, 매매 권유 등 브로커 행위 등의 행위를 포괄함.
 - 규제의 주요 대상을 가상통화교환업자로 설정하여 교환업자에게 △거래소 등록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이용자 재산과 업체 자산 분별관리 △거래 시 인증 요구 등의 의무를 부여
 -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하여 장부 서류 및 보고서 작성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검사 업무의 개선 명령 등 감독 규정을 도입

글상자 2. 일본의 ‘가상통화법’의 주요 내용

■ 일본정부는 ‘가상통화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 및 교환업자의 정의, 의무, 위반 시 제재 방법 등을 규정하고(개정자금결제법), 불법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이용자에 대한 인증 요구 및 가상통화 교환업자에게 범죄수익이전 방지의 의무 부여(개정범죄수익이전방지법) 등을 실시

표 3.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교환업의 정의

	가상통화	가상통화교환업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 또는 통화표시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재산적 가치 - 상품·서비스의 대금결제, 법정통화 및 다른 가상통화와 상호교환 가능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전 가능 	다음 중 하나를 업으로 행하는 서비스: ① 가상통화와 본원통화·외환 교환(매매) 및 가상통화 간 교환 ② 교환의 매개·중개·대리 ③ 상기 ①, ②의 행위에 대한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통화 관리
특징 및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님(즉 국가나 중앙은행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지 않음).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u>결제·매매·교환이 가능한 결제수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2P 및 거래소를 통한 거래뿐 아니라 <u>가상통화간 교환업무도 포함</u> - 가상통화의 매개·중개·대리업도 해당 예) 가상통화 구입 권유나 가상통화 매매 브로커 등도 이에 포함 - ③에 의해 금전·가상통화 관리만을 업으로 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다고 해석 가능(전자지갑 관리 등)

자료: Anderson Mori & Tomotsune(2016), 「仮想通貨に関する国会提出法案について」 참고하여 저자 작성.

50) 金融庁(2016. 5. 25), 「情報通信技術の進展等の環境変化に対応す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글상자 2. 계속

- [등록제 도입] 무분별한 거래소 설립을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가상통화교환업자 등록제를 의무화하여 금융청 재무국의 등록을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가상통화 교환서비스 시행 가능
 - 등록 조건으로 주식회사 형태, 최저자본금(1,000만 엔 이상) 보유 증명, 파산 상태가 아닌 재정상태 등 일정한 요건 충족 필요(외국회사도 동일하게 적용)⁵¹⁾
- [정보 제공] 거래 시 이용자가 위험 등을 인지한 후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제공
 - 가상통화교환업자는 이용자에게 취급하는 가상통화의 명칭 및 구조 등에 대한 설명과, 가상통화의 특성(법정통화가 아니며 가격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수수료 및 계약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재산 분별관리] 이용자의 금전·가상통화와 사업자의 금전·가상통화의 구분 관리 의무화
- [이용자 인증] 자금세탁·범죄이용 방지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의 공적증명서 제시 요구
 - 계좌 개설, 200만 엔을 초과하는 가상통화의 교환·현금거래, 10만 엔을 초과하는 가상통화의 이전(송금) 등의 경우에 이용자의 공인인증서(운전면허증 등) 제시 요구
 - ※ 한 번 확인이 완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증명을 요구하지 않음.

■ [가상통화법의 영향] 가상통화법 제정 이후 가상통화의 과세, 회계처리 방안 등에 대한 정부지침이 발표되는 등 가상통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가상통화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고 있음.

- [세금 관련 규제] 일본정부는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수단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2017년 7월부터 가상통화 구입·거래 시 소비세를 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더욱 활발해짐.
 - 기존에는 엔화로 가상통화를 구매할 경우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처럼 소비세가 부과되었으나(거래 시 8%), 가상통화법에 입각한 2017년도 세제개정 이후 구입 시 비과세 결정⁵²⁾
 - 가상통화의 거래 시 발생한 차익은 '잡소득'으로 취급되어 금액에 따라 5~45%의 누진세를 차등적으로 과세⁵³⁾
- [거래소 해킹] 2018년 1월 26일 일본의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체크의 가상화폐 NEM(New Economy Movement)이 외부 해킹으로 유출된 이후 가상통화 시세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법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음.
 - 코인체크는 해킹으로 시가 580억 엔(5억 달러) 규모의 NEM이 도난당했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NEM을 비롯한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가상통화의 가격이 일제히 하락

51) 2018년 1월 17일 기준으로 총 16개의 교환업자가 등록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6개 업체가 금융청의 승인을 대기하고 있음.
(<http://www.fsa.go.jp/menkyo/menkyoj/kasoutuka.pdf>, 검색일: 2018. 1. 28).

52) 財務省(2017. 3. 31), 「消費税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53) 国税庁(2017. 12. 1), 「仮想通貨に関する所得の計算方法等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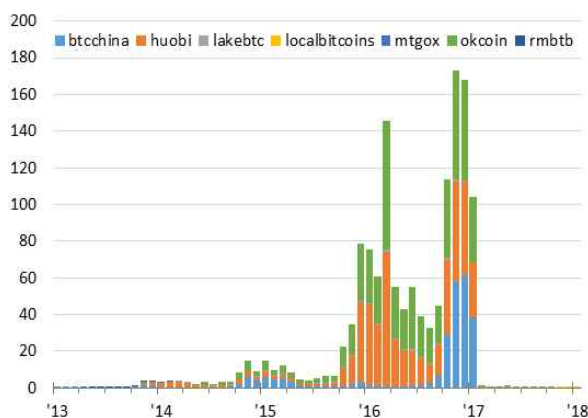
- 개정자금결제법에 근거하여 일본 금융당국(금융청)은 1월 26일 코인체크에게 유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이후 보고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9일 코인체크에 대해 △문제의 원인규명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대응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포함한 업무개선명령을 내림.⁵⁴⁾
- 또한 금융청에 등록된 가상화폐교환업자 16개와 ‘간주업자’⁵⁵⁾ 16개를 대상으로 2월 13일까지 불법거래 등에 대한 시스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긴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다. 중국

- [거래 현황]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 채굴량의 80%, 거래량의 95%⁵⁶⁾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9월 중국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폐쇄하면서 위안화 거래가 중단됨.
 -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당국의 주식·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응하여 비트코인이 대체 투자경로로 주목을 받았고, 중국정부의 강력한 자본유출 규제에 따라 비트코인이 자본유출 대체 경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중국의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거래 후 출금에 대한 수수료만 부과하여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
 -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들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정부당국은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폐쇄 하였으며, 2017년 9월부터 위안화 거래가 전면 중단되었음.

그림 10. 비트코인 위안화 거래량 추이

(단위: 백만 비트코인)



자료: bitcoinity.org(검색일: 2018. 1. 29).

그림 11. 중국 비트코인 위안화 거래가격 추이

(단위: 천 위안)



자료: bitcoinity.org(검색일: 2018. 1. 29).

54) <https://jp.reuters.com/article/fsa-coincheck-idJPKBN1FI0AI>(검색일: 2018. 1. 30).

55) 간주업자(みなし業者)란 금융청에 가상화폐교환업자로서 등록을 신청한 이후 승인을 얻기 전 등록업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로, 개정법 시행일인 2017년 4월 시점에 영업 중이었던 업체 중 9월 안에 등록 신청을 한 업체에 한하여 허가.

56) 2017년 1월 기준 중국의 가상통화 거래 비중은 매체에 따라서 전체 거래량의 98%, 95%, 80% 등으로 각기 다르게 발표되었으나, 80%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음. 본고의 95%는 코인데스크(coindesk.com)의 집계에 따름.

- [규제배경] 금융 리스크 방지는 중국정부의 향후 5년간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바,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상통화 규제의 주요 목적임.
 - 시진핑 집권 2기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안정적인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을 중점 임무로 강조하였음.
 - 중국은 위안화 환율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자본의 해외유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중국 내 자금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2016년 중국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의 52%가 미국, 유럽 등 해외국가로 유출됨.⁵⁷⁾
 - 또한 가상통화 거래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자금세탁과 탈세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규제 현황] 중국정부당국은 2013년 말부터 가상통화 관련 규제정책을 마련하였으며 비트코인 거래가 과열되기 시작한 2017년 들어 더욱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실시함.
 - 중국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는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2013년 12월 가상통화가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규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통지를 발표하면서 시작됨.
 - 가상통화는 일종의 가상상품(虚拟商品)으로서 화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시장에서 유통·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정부당국의 입장임.⁵⁸⁾
 - 2014년 4월에는 2013년 발표된 규제를 한층 강화하여 비트코인 거래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함.
 - 2016년 말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자, 2017년 1월과 2월에 걸쳐 중국 내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비트코인 거래소의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
 - 2017년 9월에는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고 중국 내 가상통화 거래소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함.
 - 2018년 1월에는 가상통화 채굴업체의 순차적 퇴출(4일)과 지급결제 업체의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17일) 조치를 실시함.
 - 2018년 1월 17일 조치는 비트코인 거래 중단 이후에도 가상통화에 대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앱 등에 대한 단속이 주를 이룸.

57) <https://www.wsj.com/articles/bitcoin-trading-faces-greater-scrutiny-in-china-1484818656>.

58) 中国人民银行·工业和信息化部·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

표 4. 중국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주요 정책조치 정리

발표시기	관련 문건 및 조치	주요 내용
2013. 12	비트코인 관련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 ⁵⁹⁾	-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기능 부정 -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업무 종사 금지 - 비트코인 거래의 규범화
2014. 4	강화된 비트코인 관련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 ⁶⁰⁾	- 비트코인 거래 계좌 정지
2017. 1~2	중국 내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 ⁶¹⁾ 현장조사	- 외환관리법 및 자금세탁금지법 등 금융 관련 법률·법규, 국가세수(稅收) 등 유관 법률·법규의 준수 촉구
2017. 9. 4	가상통화 발행 용자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 ⁶²⁾	- 가상통화공개(ICO) 및 가상통화 거래와 용자 금지(채굴만 가능) - 중국 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2018. 1. 4	각 지방당국에 가상통화 채굴 금지 공문 하달 ⁶³⁾	- 전기, 토지, 조세 및 환경보호 등 각종 조치를 통해 가상통화 채굴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하도록 지시함.
2018. 1. 17	불법 가상통화 거래 제공에 대한 조사정리 업무 통지 ⁶⁴⁾	- 지급결제 업체의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금지

자료: 중국 인민은행(<http://www.pbc.gov.cn>) 및 증권감독관리위원회(<http://www.csrc.gov.cn>)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규제영향] 중국의 가상통화 채굴업체 및 거래소는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대안을 통해 가상통화 채굴 및 거래를 계속하고 있으나, 중국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러한 우회거래가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 중국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자 중국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개인 P2P 형태로 거래 방식을 전환하는 한편, P2P 플랫폼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채굴업체 및 거래소가 정부의 규제를 피해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함.⁶⁵⁾
- 중국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초강도의 규제는 물론,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음.
- 강력한 규제의 다른 한편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인민폐와 공동으로 사용되는 법정화폐로서 가상통화를 자체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음.
 - 이 실험은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여 자금의 거래내역 및 소유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이러한 정부 발행 가상통화가 실현된다면, 가상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모두 배제되고, 가상결제에 대한 정부의 감시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평가

59) 中国人民银行·工业和信息化部·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

60) 『关于进一步加强比特币风险防范工作的通知』.

61) 현장조사 대상이 된 거래소는 “火币网”, “币行”, “中国比特币”, “比特币交易网”, “好比特币”, “云币网”, “元宝网”, “BTC100”, “聚币网”, “币贝网”, “大红火” 등 11곳임.

62) 中国人民银行 中央网信办 工业和信息化部 工商总局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 『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

63) 중국 국무원 산하 인터넷금융위험관리공작영도소조가 각 지방당국에 관련 업무를 지시함.

64) 中国人民银行营业管理部 『关于开展为非法虚拟货币交易提供支付服务自查整改工作的通知』.

65) <http://www.scmp.com/business/companies/article/2117806/china-closes-its-doors-cryptocurrencies-exchanges-shift-their>;
<https://www.ccn.com/chinas-largest-bitcoin-exchange-is-reallocating-to-japan-and-south-korea-with-major-bank-d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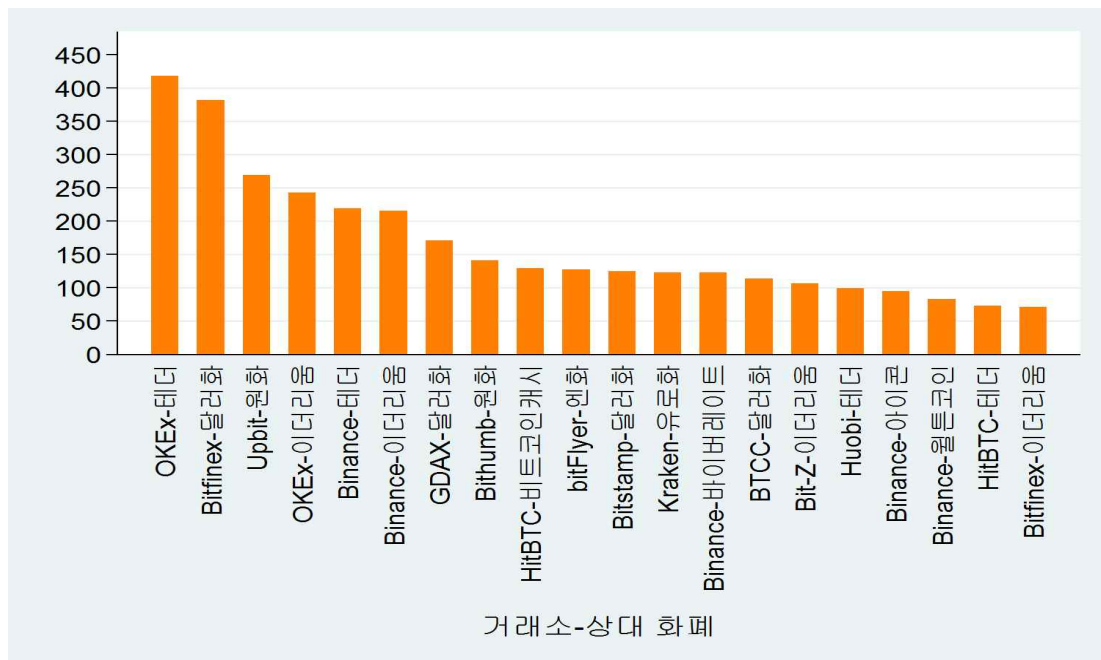
라. 유럽

■ [시장 현황] 유럽의 가상통화 시장은 다른 주요지역 대비 저조한 편

- 유로화의 가상화폐 거래는 달러화, 원화, 엔화 등에 비해 저조함.
- 시가총액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최대 유로화 거래소인 크라켄(Kraken)의 1일 거래규모가 1억 7천만 달러 수준으로 달러화, 엔화, 원화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음(그림 12 참고).

그림 12. 비트코인 1일 거래량 기준 '거래소-상대 화폐' 조합 상위 20개

(단위: 백만 달러)



주: 1) 테더(USDT),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바이버레이트(VIB), 아이콘(ICX), 월트코인(WTC)은 가상통화.

2) 2018년 1월 29일 11시 25분 기준 직전 24시간 거래량.

자료: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bitcoin/#markets>(검색일: 2018. 1. 29).

-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가상통화의 활용도 저조함.

- 네덜란드의 768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상통화 결제 허용 업체는 6% 수준⁶⁶⁾
-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은 비트코인이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통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투자자들에 경고⁶⁷⁾

■ [통화당국의 대응] ① 현행 가상통화가 아직은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대응을 하고

66) Jonker(2017), "What drives virtual currency acceptance by retailers?"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ECB-Bdl conference. (30 November-1 December)

67) European Central Bank(2017. 12. 29), "Interview with Börsen-Zeitung"; European Central Bank(2017. 12. 30), "Interview with Caixin Global"; 한국은행(2016. 7. 21), 「중앙은행과 디지털 통화」, 런던사무소 현지정보.

있지 않으나 ② 분산원장기술을 은행간 결제시스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③ 스웨덴은 실물화폐 수요 감소에 따라 전자법정화폐 발행을 검토 중

- 현행 가상통화가 법정화폐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고, 현재와 같은 거래규모로는 금융시스템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⁶⁸⁾
-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은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동 기술의 현재 발전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유럽중앙은행은 일본은행과 함께 실시한 DLT 모의적용에서 동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확인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발전 및 응용 수준이 낮아 현행 시스템을 대체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⁶⁹⁾
 - 영란은행 또한 리플(Ripple)의 원장연결기술(ILP: Interledger Protocol)을 RTGS간 결제에 모의적용한 바 있음.⁷⁰⁾
- 한편 스웨덴중앙은행(Riksbank)은 전자지급수단의 발달·확산에 따른 실물화폐수요 급감에 대한 대응으로 전자화폐(e-krona)를 실물화폐와 병행 발행하는 것을 검토 중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는 기존의 실물화폐와 같은 법정화폐로, 법적으로 누구의 채무도 아닌 비트코인 등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채무임.⁷¹⁾
 - 스웨덴의 경우 소매거래 결제에서 화폐의 비중이 2016년 15%에 그치는 등 화폐수요가 매우 낮음.⁷²⁾
 - 이에 따라 스웨덴중앙은행은 전자화폐 병행발행을 검토하는 'e-krona project'를 2017년 시작하였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발행여부를 2018년 말 결정할 예정⁷³⁾
 - 전자화폐의 주된 목적은 소액 지급·결제용으로,⁷⁴⁾ 발행 후에도 잔고 및 거래가 중앙의 장부에 기록되는 방식(register-based)과 현행 선불카드와 같이 카드, 휴대전화 등에 잔고 및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value-based)이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전자화폐 보유 및 거래의 실명화가 필요⁷⁵⁾
 - 영란은행 또한 현재 금융기관에만 허용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전자화폐에의 접근권한을 비금융기관 및 개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⁷⁶⁾

■ [행정부의 대응] 유럽연합은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유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도 관련 규제를 검토 중

-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유통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 지침인 Directive (EU) 2015/849는 금융거래에서 고객실명확인, 실질주주(beneficial owner) 확인, 거래의 지속적인 감시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제도

68) European Central Bank(2017. 12. 29), *op. cit.*; European Central Bank(2017. 12. 30), *op. cit.*; Ali *et al.*(2014), "The economics of digital currencies," *Quarterly Bulletin*, Q3, Bank of England.

69) European Central Bank and Bank of Japan(2017. 9. 6), "BOJ/ECB joint research project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Press release.

70) Bank of England(2017), *FinTech Accelerator Proof of Concept: Ripple*.

71)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2015), *Digital currencie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72) Riksbank(2017a), *The Riksbank's e-krona project: Report 1*, p. 4.

73) Riksbank(2017b), *The Riksbank's e-krona project: Action plan for 2018*, Figure 2.

74) Riksbank(2017a), *op. cit.*, p. 6.

75) *Ibid.*, Chapter 2.

76) Cleland(2017), *Digital future for sterling: assessing the implications*, Bank of England.

(Customer Due Diligence)를 두고 있음.⁷⁷⁾

- 동 제도를 가상통화 거래소 및 전자지갑 업체에도 적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현재 입법 과정에 있음.⁷⁸⁾
 -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소 및 전자지갑 업체의 등록 의무화도 포함
 - 특히 고객실명확인과 실소유주 확인 절차는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유통 방지에 필수적
- 프랑스 정부도 가상통화가 조세회피, 자금세탁, 범죄자금 유통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발족하였음.⁷⁹⁾
- 또한 프랑스와 독일은 2018년 3월 개최될 아르헨티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가상통화 규제안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국제공조를 추진할 예정⁸⁰⁾

마. 동남아

■ [사용 현황]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서 가상통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가 시장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5년 말 8만 명이던 인도네시아의 비트코인 회원수가 2017년 1월 25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일일거래액이 200억 루피아(약 1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⁸¹⁾
- [필리핀] 가상통화거래소가 이미 개설되었고 비트코인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음.
 - 가상통화거래소가 2개(Rebittance Inc.와 Betur Inc.) 개설된 가운데 추가 설립과 관련해 현재 12개의 기업이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⁸²⁾
 - BSP에 따르면, 필리핀은 월 평균 비트코인 거래량이 2015년 200만 달러에서 2017년 상반기 880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함.⁸³⁾
- [싱가포르]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한 상품(good purchased)으로 인정하였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specific tax)을 부과함.⁸⁴⁾

77) Directive (EU) 2015/84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J L 141,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5L0849>(검색일: 2018. 1. 24).

78)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7),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and amending Directive 2009/101/EC.*

79) <https://goo.gl/fikWEc>(검색일: 2018. 1. 24).

80) Reuters(2018. 1. 19), "France, Germany to make joint bitcoin regulation proposal at G20 summit," <https://goo.gl/tSMtNd>(검색일: 2018. 1. 24).

81) 仮想通貨JAPAN編集部(2017), 「東南アジアの仮想通貨に対する動きまとめ: 2017年11月版」(11月22日), <https://vmoney.jp/archives/320>(검색일: 2018. 1. 25).

82) Lawrence Agcaoili(2017), "Virtual currency gaining popularity in Philippines," *The Philippine Star.* (December 15) <http://www.philstar.com/business/2017/12/15/1768382/virtual-currency-gaining-popularity-philippines>(검색일: 2018. 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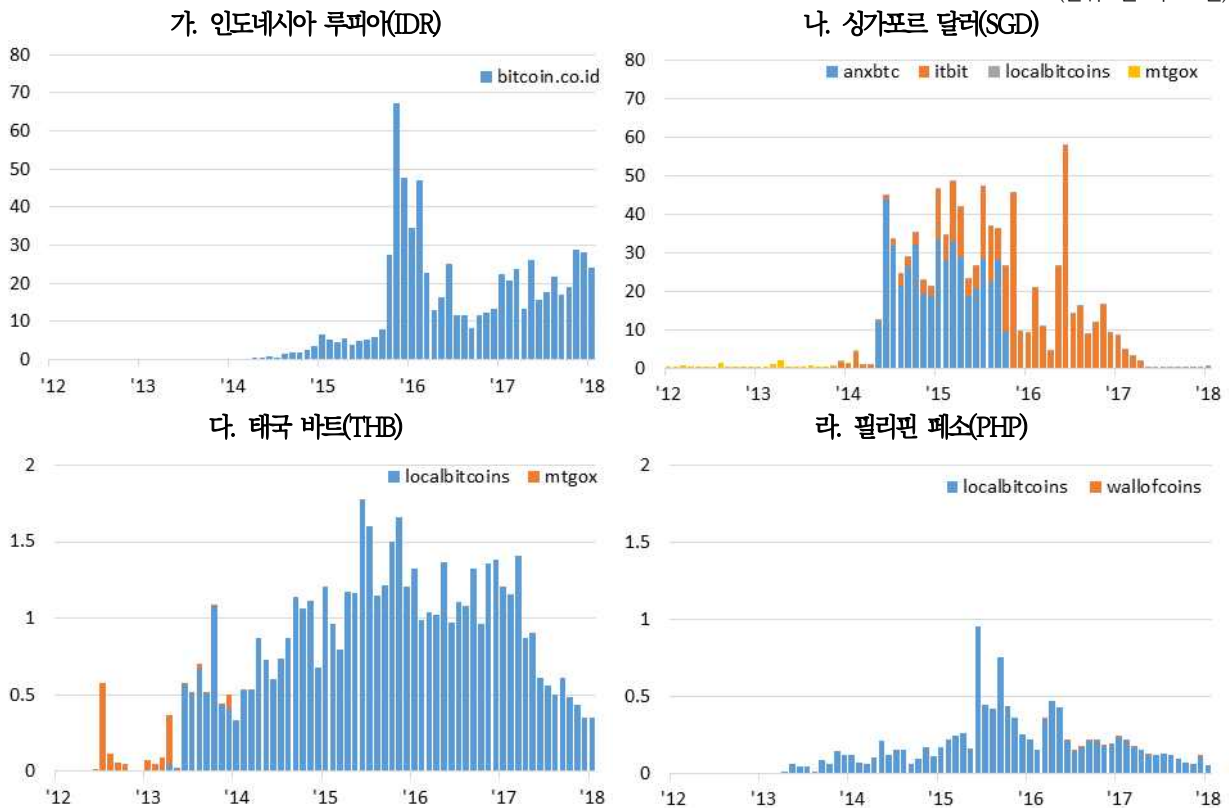
83) Lawrence Agcaoili(2017), "Virtual currency gaining popularity in Philippines," *The Philippine Star.*(December 15) <http://www.philstar.com/business/2017/12/15/1768382/virtual-currency-gaining-popularity-philippines>(검색일: 2018. 1. 25).

84) Thomson Reuters(2017), "Cryptocurrencies by country." (October 25) <https://blogs.thomsonreuters.com/answeron/world-cryptocurrencies-country/>(검색일: 2018. 1. 25).

-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가상통화를 ‘돈(money),’ ‘통화(currency)’ 또는 ‘상품(goods)’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상통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거래를 물물교환거래(barter trade)로 간주하고 서비스 거래에 준하는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함.⁸⁵⁾

그림 13. 동남아 주요국 통화를 사용한 비트코인 월별 거래량 추이

(단위: 천 비트코인)



자료: <http://data.bitcoinity.org/markets/volume/30d?c=e&t=b>(검색일: 2018. 1. 31).

- [태국] 가상통화에 대해 사실상 묵인 단계에 있는 상황이며, 관광활성화로 인한 외화유입이 증가하면서 가상통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연구 및 스타트업 기업도 생겨나고 있음.
- 관광이 2번째로 큰 산업인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관광업계에서 비트코인을 화폐 대신 받고 있음.⁸⁶⁾
- 특히 태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비트코인 거래회사(Bitcoin사, Coin사 등)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허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전자상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일본계 가상통화 스타트업 Omise가 태국의 Digital Startup of the Year를 수상한 바 있음.⁸⁷⁾

85)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2018), "GST on the Supply of Goods," <https://www.iras.gov.sg/IRASHome/GST/GST-registered-businesses/Specific-business-sectors/e-Commerce/#title5>(검색일: 2018. 1. 30).

86) Kevin Helms(2017), "Bitcoin Adoption in Thailand Led by Tourism Industry." (April 18) <https://news.bitcoin.com/bitcoin-adoption-thailand-tourism-industry-scaling-debate/>(검색일: 2018. 1. 26).

87) 仮想通貨JAPAN編集部(2017), 「東南アジアの仮想通貨に対する動きまとめ: 2017年11月版」(11月22日), <https://vmoney.jp/archives/320>(검색일: 2018. 1. 25).

- [베트남] 가상통화가 정식 결제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과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음.

■ [거래 배경]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 가상통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높은 송금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금이나 방문 외국인의 여행경비 지출에 가상통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⁸⁸⁾
- 주요국 해외노동자들의 본국 송금(inflow) 규모(2017년 추정): 필리핀 328억 달러, 베트남 138억 달러, 인도네시아 87억 달러, 태국 66억 달러⁸⁹⁾
-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거나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데 반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접근은 쉬운 편임.
- 필리핀의 경우 국민의 86%가 자금 및 자산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⁹⁰⁾
- 동남아에서도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상업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했던 중국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나 본격화되지 않은 동남아를 거래루트로 이용함.

■ [규제 동향]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 가상통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최근 들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거나 불법이나 탈법 방지, 특히 자금세탁, 테러단체 지원, 조세회피 등의 금지에 초점을 맞춘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은 2017년 11월 30일 핀테크 관련한 규정(No 19/12/PBI/2017)을 통해 디지털 화폐로 정의되는 가상통화를 정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함.⁹¹⁾
- 이에 따라 가상통화가 널리 활용되던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상통화의 매매와 거래가 불법이며, 가상통화거래소의 업무도 중단됨.
- [말레이시아] 가상통화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이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당초 2017년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화폐 규정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내용은 반(反) 자금세탁, 반 테러지원 및 불법활동법(Anti-Money Laundering, Anti-Terrorism Financing and Proceeds of Unlawful Activities Act 2001)에 근거한 법적 의무, 요구조건, 기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짐.⁹²⁾

88) Paula P. Plaza(2017), "Recognition and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in the Philippines," *Business World*. (November 22) <http://bworldonline.com/recognition-regulation-virtual-currency-philippines/>(검색일: 2018. 1. 26).

89) World Bank(2018), Migration and Remittances DB(검색일: 2018. 1. 29).

90) Paula P. Plaza(2017), "Recognition and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in the Philippines," *Business World*. (November 22) <http://bworldonline.com/recognition-regulation-virtual-currency-philippines/>(검색일: 2018. 1. 26).

91) Harry Kuswara(2017), "Indonesian Central Bank Regulates Financial Technology." (December 20)

<http://blog.ssek.com/index.php/2017/12/indonesian-central-bank-regulates-financial-technology/>(검색일: 2018. 1. 29).

92) "Malaysia issues draft regulations for crypto currency businesses"(2017), *Reuters*. (December 15)

<https://www.reuters.com/article/us-malaysia-bitcoin/malaysia-issues-draft-regulations-for-crypto-currency-businesses-idUS>

- [필리핀]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17년 1월 19일 가상통화거래 가이드라인(Circular 944, Guidelines for Virtual Currency Exchanges)을 발표해 디지털화폐 형태의 가상통화 거래의 합법성을 인정함.⁹³⁾
 -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혁신 장려,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금지, 금융 시스템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상통화를 공식 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음.⁹⁴⁾
 - 가상통화거래소는 송금 및 자금이전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등록증을 획득해야 하며, 고객과 시스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안전통제메커니즘, 내부 통제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함.
 - BSP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잠재적 이익 못지않게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료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음.
- [싱가포르] 스마트금융과 핀테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가상통화를 일반통화와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가상통화거래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싱가포르 부총리이자 중앙은행 격인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사회 의장 산무가 랫남(Tharman Shanmugaratnam)은 가상통화와 신용통화는 구분 없이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고 의무나 규제 또한 동등하게 부여된다고 밝힘.⁹⁵⁾
 -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가상통화공개(ICO)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통화보다 더욱 엄격한 보고의무와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⁹⁶⁾
 - 다만 MAS는 가상통화의 발행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짐.
- [태국] 가상통화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태국은 정부당국이나 중앙은행(BoT: Bank of Thailand) 모두 이를 용인하고 있으며, BoT는 2017년 중반부터 신형 핀테크의 활성화, 혁신 강화, 리스크 방지 등을 위해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지불방법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
 - BoT가 2014년 초 비트코인 사용이 불법이 아님을 밝힌 이후 태국에서는 관광업과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확대되어왔음.
 - 태국에서는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외환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트(Baht)화 이외 화폐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 아울러 자금세탁방지기구(Anti-Money Laundering Organisation)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불법자금세탁 방지, 감시와 신고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⁹⁷⁾
- [베트남]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은 2017년 10월 28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는 정식 결제수단이 아니며, 불법인 결제방법을 사용할 경우 벌금이나 기소대상임을 알리는 규정을 발표함.⁹⁸⁾
 -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사용이 금지됨.

KBN1E826Z(검색일: 2018. 1. 26).

93) Bangko Sentral ng Pilipinas(2017), "Circular 944, Guidelines for Virtual Currency Exchanges." (January 19)

94) Lawrence Agcaoili(2017), "Virtual currency gaining popularity in Philippines," *The Philippine Star*. (December 15)

<http://www.philstar.com/business/2017/12/15/1768382/virtual-currency-gaining-popularity-philippines>(검색일: 2018. 1. 25).

95) 仮想通貨JAPAN編集部(2017), 「東南アジアの仮想通貨に対する動きまとめ: 2017年11月版」(11月22日), <https://vmoney.jp/archives/320>(검색일: 2018. 1. 25).

96) Samuel Haig(2018), "Singapore to Extend Regulatory Mandate Regarding Cryptocurrencies." (January 12)

<https://news.bitcoin.com/singapore-extend-regulatory-mandate-regarding-cryptocurrencies/>(검색일: 2018. 1. 25).

97) "AMLO orders that cryptocurrency deals must be reported to curb criminals' money laundering"(2018), *THE NATION*(January 31), <http://www.nationmultimedia.com/detail/national/30337557>(검색일: 2018. 1. 31).

98) 仮想通貨JAPAN編集部(2017), 「東南アジアの仮想通貨に対する動きまとめ: 2017年11月版」(11月22日), <https://vmoney.jp/archives/320>(검색일: 2018. 1. 25).

3. 정책 시사점

- [법적 정의(定義)]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규제 등의 정책 수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며, 이미 관련 정의를 수립한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증권과 같은 상품이자 자산(property)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일본정부는 가상통화를 자산이자 동시에 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거래소, 전자지갑 업체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정의를 수립하였음.
 - 한편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과세] 주요국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에 따라 관련 거래에 양도소득세, 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서 과세방안을 선택한 배경,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과세당국은 가상통화가 자산이라는 정의 아래 자산 거래에 관한 과세 원칙을 가상통화 거래에 적용하고 있고, 2017년 말 통과된 세제개혁안에서도 가상통화간 거래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음.
 - 반면에 가상통화를 자산이자 결제수단으로 정의한 일본은 가상통화 구입에 대한 소비세를 2017년 폐지하였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가상통화로 결제한 거래에 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함.

- [규제] 주요국들은 대부분 현행 가상통화의 익명성이 조세회피, 테러 지원, 마약밀매, 불법자금 유통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체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관련 연방법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거래도 등록의무를 가진다고 밝힘.
 - 일본의 경우 다양한 관련법을 통틀어 '가상통화법'으로 지정하고 있고, 특히 거래소, 전자지갑 업체 등에 고객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EU는 금융거래에서 고객실명확인, 실질주주(beneficial owner) 확인, 거래 감시 등을 포함한 고객 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가상통화 거래소 및 전자지갑 업체에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 정부도 가상통화 규제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였음.
 - 한편 중국의 경우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거래소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우회하는 거래방식 발생, 채굴업체 및 거래소의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베트남의 경우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음.

- [국제공조] 익명성과 국경간 거래의 수월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의 가상통화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므로 주요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G20 등의 다자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정부의 극단적 조치에 따라 상당수의 중국 가상통화 거래 및 관련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 시장 혼란 방지, 투자자 보호, 규제 실효성 등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재무부는 가상통화 규제 관련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 중으로 담당 차관이 관련 협의차 2018년 1월 방한하기도 하였고, G7, FATF 등은 이미 2015년부터 가상통화 거래 및 관련 행위자에 대한 규제 공조를 시작하였음.
- 또한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2018년 3월 개최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공동으로 규제안을 제안할 예정이므로 우리 정부도 관련 논의에 미리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KIEP**